

저당권방식 주택연금 담보주택 임대 동의에 대한 안내말씀

<저당권방식 주택연금 담보주택 임대 동의란?>

저당권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입원·요양원 입소, 자녀 봉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증금 없는 전부 임대 가능

1. 신청대상 : 주민등록 이전 승인을 받아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고객

구 분	내 용
신청대상	주민등록 이전 승인을 받은 고객
임대방식	① 고객이 보증금 없는 임대계약 체결 → ② 공사로 임대 동의 신청 → ③ 공사의 확인 및 동의
임대기간	2년 이내 (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2년6개월 이내)
필요서류	- 임대 신청 및 확인서(공사 양식) - 임대계약서 사본 - 임차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공사 양식) - 고객(부부 공동소유의 경우 배우자 포함)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
동의방법	공사 지사등에서 보증금 없는 임대임을 확인 후 유무선 또는 서면(주택연금 담보주택 임대 동의서)으로 통지
사후관리	공사가 직접 관리

2. 신청방법 : 공사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하여 신청

3. 유의사항

- 주민등록 승인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2개월 이내에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입증 서류와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여 사후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.
 - 점검결과 약정사항 위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 승인기간 연장 및 담보주택 임대(연장 포함)를 하실 수 없습니다.
- 임대 동의기간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동의기간 만료 전까지 연장신청하여 임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.
 - 동의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동의를 다시 받지 못하신 경우, 담보주택 임대(연장 포함)를 하실 수 없습니다.
 -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요구할 경우에는 사후점검 및 동의 연장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공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공사의 동의 없는 임대계약(예 : 보증금 있는 임대계약)의 체결 등 약정사항 위반 시 지급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담보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공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